

서울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나201179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나201179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가합4945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순, 김승섭

피고, 피항소인 1. K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

담당변호사 하동균, 김용찬, 김종수, 나병훈, 안권섭, 안종오, 이우종

2. L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위로

담당변호사 박현진

변론 종결 2024. 8. 22.

판결 선고 2024. 11. 21.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가합49453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제1심판결 별지1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5쪽 아래에서 3행의 "확정되었다"를 "확정되었다(이하 이를 통틀어 '1차 관련사건'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쪽 아래에서 3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X는 2015. 7. 21. '이 사건 토지는 V이 사정받고 X가 순차 상속받은 X의 소유인데 피고 K과 AA에게 각 1/3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S중중과 공동하여 이 사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과 S중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본소를 제기하였고, S중중은 X를 상대로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X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S중중의 반소 청구가 인용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6461(본소), 2015가합23395(반소)], 항소심법원은 2017. 10. 19. X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서울고등법원 2016나2055415(본소), 2016나2055422(반소)]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를 통틀어 '2차 관련사건'이라 한다).』

○ 제1심판결 5쪽 아래에서 2행부터 6쪽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별지3 기재 토지들의 권리관계

1) 별지3 목록 기재 토지(애초에는 하나의 필지였으나 이후 현재와 같이 분할되었다, 이하 '제1관련토지'라고 한다)는 AK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이에 관하여 1980. 9. 2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의하여 피고 K 등과 N씨 25세손인 A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 각 1/4)가 마쳐졌다. AA이 사망하여 그 명의의 1/4 지분은 피고 L에게 상속되었으며, 피고 L이 이중 일부1)를 배우자 AM에게 증여하여 위 지분에 관하여 A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AL은 그 명의의 1/4 지분 중 일부2)를 딸인 BT에게 증여하여 위 지분에 관하여 BT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P중중은 2017. 3. 2. 본소로, ① X, AL 및 피고들을 상대로 제1관련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② BT, AM를 상대로, 제1관련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③ S종중을 상대로 제1관련토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였고, S종중은 독립당사자참가로서 X, AL 및 피고 L을 상대로 명의신탁자 권리의 확인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8. 11. 21. P종중의 본소 청구 가운데 S종중에 대한 확인의 소 등3) 을 각하하고 X, AL 및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S종중의 참가신청을 각하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4277, 2017가합24217(독립당사자참가의소)]. 이에 피고 K와 S종중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9. 7. 25. ① 피고 K의 항소를 기각하고, ② S종중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P종중에 대한 참가신청을 각하하며, 교환적으로 변경한 X, AL 및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05930, 201942005947(독립당사자참가의소)]. 위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2019다263370, 2019다263387(독립당사자참가의소)]를 거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를 통틀어 '3차 관련사건'이라 한다).』

라. 별지4 기재 토지들의 권리관계

1) 별지4 목록 기재 토지(애초에는 하나의 필지였으나 이후 현재와 같이 분할되었다. 이하 '제2관련토지'라고 한다)는 AN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이에 관하여 1980. 9. 2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의하여 피고 K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 각 1/3)가 마쳐졌고, AA이 사망하여 그 명의의 1/3 지분은 피고 L에게 상속되었으며, 피고 L이 이를 배우자 AM에게 증여하여 위 지분에 관하여 A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P종중은 2020. 10. 21. 본소로, ① X 및 피고들을 상대로 제2관련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② AM를 상대로 제2관련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고, S종중은 독립당사자참가로서, ① 원고를 상대로 제2관련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하였으며, ② X 및 피고들을 상대로 제2관련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2. 4. 28. S종중의 P종중에 대한 확인의 소를 각하하고, P종중의 청구를 인용하며, S종중의 X 및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9998, 2021가합581267(독립당사자참가의소)]. 이에 피고 K와 S종중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2. 12. 22. K과 S종중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2나2024153, 202242024160(독립당사자참가의소)], 위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2023다208240, 2023다208257(독립당사자참가의소)]를 거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를 통틀어 '4차 관련사건'이라 한다).』

○ 제1심판결 7쪽 2행의 "있는데."를 "있는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7쪽 3행의 "원고에게"를 "원고들에게"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8쪽 아래에서 4행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 2차 관련사건에서"로, 같은 쪽 아래에서 3행의 "제1, 2관련토지에 관하여는"을 "제1, 2관련토지에 관하여는 3, 4차 관련사건에서"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9쪽 7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3, 4차 관련사건에서 S종중이 1980년경에는 실체가 없었고 1994년경 비로소 실체를 갖추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S종중이 피고 K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한 1, 2차 관련사건과 달리 U이 피고 K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3, 4차 관련사건에서 판단된 바와 같이 설령 S종중이 1980년경 실체가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위임장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U' 개인의 소유로서 이를 피고 K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원범

판사이희준

판사김광남

별지

지분을 뜻한다.

2) 제1관련토지 중 제1심판결 별지3의 순번 9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의 각 1/4 지분을 뜻한다.

3) P중중의 BT, AM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의 소 중 BT, A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바 없는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 적격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였다.